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경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171

발의연월일: 2025. 4. 28.

발 의 자: 강경숙·최민희·정춘생

박은정・김준형・황운하

김재원 • 이해민 • 김선민

신장식 · 서왕진 · 진선미

백선희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「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(이하"협약"이라 함) 이행 현황에 대한 우려사항과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음.

그런데 해당 권고안에는 지난 권고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의 권고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대한민국 정부가 협약을 실질적으로 이 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 정부가 국제조약의 내용을 적 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계획과 법적·제도적 뒷받침 이 필요함.

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협약과 같이 장애인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 도록 하고, 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함과 동시에 국회에 보 고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3 신설).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국가는 「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 등 장애인 차별 해소와 관련하여 국가가 가입한 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8조의3(조약 이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「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 및 그 밖에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조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(이하 "조약이행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조약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조약 이행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 - 2. 조약 이행을 위한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
 - 3. 조약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인력 확충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조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
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약 이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을 지체

없이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그 밖에 조약 이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8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| 제8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|
| 의무) ①・② (생 략) | 의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|
| <u><신 설></u> | ③ 국가는 「장애인의 권리에 |
| | 관한 협약」 등 장애인 차별 |
| | 해소와 관련하여 국가가 가입 |
| | 한 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 |
| | 력하여야 한다. |
| <u> <신 설></u> | 제8조의3(조약 이행계획의 수립 |
| | ·시행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|
| | 「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 |
| | 약」 및 그 밖에 장애인 차별 |
| | 해소를 위한 조약으로서 대통 |
| | <u> 령령으로 정하는 조약을 이행</u> |
| | 하기 위한 계획(이하 "조약 이 |
| | 행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 |
| | 립ㆍ시행하여야 한다. |
| | ② 조약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|
| |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|
| | 1. 조약 이행을 위한 정책의 기 |
| | 본방향에 관한 사항 |
| | 2. 조약 이행을 위한 제도 및 |
| |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|
| | 3. 조약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|

및 인력 확충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조약 이행을 위하여
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
인정하는 사항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약 이 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 을 지체 없이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그 밖에 조약 이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